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7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김원이·김교흥·이춘석

오세희 · 신영대 · 남인순

이정문・정준호・황 희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 중 "운영"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	6		
흥원의 <u>운영</u> 에 필요한 경비의	사업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